

화순군온천관광지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제정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회 부 일 자 : '96. 4. 8. 화순군수

나. 상 정 일 자 : '96. 4. 27. (제44회 임시회 제5차 산업. 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설명자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나. 제안이유

- 온천관광지구내에서 발생한 하수 등을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제반 비용을 온천관광지구내 이용시설물을 소유, 관리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부과 함으로서 환경 오염방지 도모

다. 주요내용

○ 하수 등의 배출 (안 제5조)

- 온천관광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 등을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 시켜야 함.

○ 배수설비의 설치 (안 제6조)

- 사업자는 하수 등을 배출하기 이전에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관리 책임을 짐.
- 당 공사시 파손된 도로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함.

○ 배수설비의 구조 (안 제7조)

- 배수관의 관경은 배출 하수 등의 유량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우수관로와 분리설치
-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부분에 방취장치 설치

○ 수세식 화장실의 설치 (안 제8조)

- 사업자는 사업장의 화장실을 수세식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

○ 사용개시의 신고 (안 제9조)

- 하수 등을 배출하기 10일전까지 동 사실을 화순군수에게 신고 해야함.

- 유지관리비의 부담 (안 제11조)
 - 사업자는 하수등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군수는 매월 15일까지 고지하고 사업자는 30일까지 납입하여야 함.
- 가산금 및 증가산금 (안 제14조)
 - 부담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소정의 가산금부과
- 사용의 제한 (안 제19조)
 - 필요할 경우 하수관거의 사용제한 (자체정화)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근성)

-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 제32조 및 수질환경 보전법 제25조 수도법 제9조의 2, 제17조, 제32조 동법시행령 제14조의 2를 근거로 제정코자 한 것으로
- 절차상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등 관계법령의 위반 사항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조례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첨부 : 화순군온천관광지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
제정안

화순군온천관광지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안

제출 년월일 : 1994. 4. .

제 출 자 : 화 순 군 수

의안	
번호	

1. 제안이유

- 온천관광지구내에서 발생한 하수등을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제반비용을 온천관광지구내 이용시설물을 소유, 관리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부과하기 위함.

2. 개정근거

- 관광진흥법 제32의 3, 시행령 28조 (유지관리 보수비의 부담)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 하수도법 제17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
- 하수도법 제32조 (이용자 부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
- 하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 2 (점용료등의 결정기준)

3. 주요골자

가. 하수등의 배출 (안 제5조)

- 온천관광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 등을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켜야 함.

나. 배수설비의 설치 (안 제6조)

- 사업자는 하수 등을 배출하기 이전에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관리책임을 짐.
- 당 공사시 파손된 도로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함.

다. 배수설비의 구조 (안 제7조)

○ 배수관의 관경은 배출 하수등의 유량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우수관로와 분리 설치.

○ 배수관 또는 맨홀등의 필요부분에 방취장치 설치

라. 수세식 화장실의 설치 (안 제8조)

○ 사업자는 사업장의 화장실을 수세식 구조로 설치 하여야 함.

마. 사용개시의 신고 (안 제9조)

○ 하수등을 배출하기 10일 전까지 동 사실을 화순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 유지관리비의 부담 (안 제11조)

○ 사업자는 하수 등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군수는 매월 15일까지 고지하고 사업자는 30일까지 납입하여야 함.

아. 가산금 및 증가산금 (안 제14조)

○ 부담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소정의 가산금 부과

자. 사용의 제한 (안 제19조)

○ 필요할 경우 하수관거의 사용제한. (자체정화)

화순군온천관광지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화순군 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화순.도곡온천관광지내에 입주하여 온천목욕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자를 말한다.
2. "하수"라 함은 온천목욕수, 생활오수등 온천관광지구내에서 배출되는 하수 전부를 통칭한다.
3. "배수설비"라 함은 각 사업장내에서 발생하는 우수를 제외한 하수를 하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와 부대설비를 말한다.
4. "하수관거"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하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관거와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부담금"이라 함은 군수가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부대설비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부대경비를 당해 사업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6. "계량기"라 함은 온천수 사용량, 상수도 사용량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부착하는 계기를 말한다.

제3조 (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관광진흥법 제23조에 의거 온천관광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 한다.

제4조 (처리시설 관리운영) ① 군수는 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도록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처리시설을 관리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건실한 환경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 관리할 수 있다.

제 2 장 배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5조 (하수 등의 배출)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수 등을 배수설비를 통하여 배출시켜야 한다.

제6조 (배수설비의 설치) ① 사업자는 하수 등을 배출하기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이 규정의 배수설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판단 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구조를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배수설비를 하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지점에 접속시켜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의 설치공사비 부담과 공사중 도로 등 파손되는 시설물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7조 (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수관의 관경은 배출 하수의 유량을 고려한 충분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 또는 맨홀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설비로 본다.

제8조 (수세식 화장실의 설치) 사업자는 사업장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개시의 신고) 사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하수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수 1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제10조 (배수설비의 관리) 배수설비는 사업자가 관리의 책임을 지며 군수는 시설이 제기능을 못할 때에는 이의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3 장 처리비용 부담

제11조 (부담금의 납부) ① 사업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부담금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부담금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

③ 부담금은 월별로 산정 부과하고 당월 15일까지 사업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고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매월 30일까지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하수량의 산정) 군수는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온천수 사용량, 상수도 사용량을 파악토록 하거나 기 산정된 자료를 활용하여 처리비용을 산정한다.

제13조 (이의신청) ① 부과 고지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 제기로 그 부담금액에 잘못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월분 부담금을 정정,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 4 장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14조 (가산금 및 증가산금) ① 군수는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정당한 부담금 이외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5조 (독촉) 군수는 사업자가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납부기한은 발부일 부터 10일 이상으로 정한다.

제16조 (체납처분) 군수는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체납처분할 수 있다.

제17조 (자료의 제출요구등) 군수는 사업자에게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권리. 의무의 승계) 본 처리구역 내에서 시설물을 취득한 사업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전 사업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제19조 (사용의 제한) 군수는 필요할 경우 하수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일 이전에 미리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배수설비등 시설설치 의무 불이행) ① 군수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등 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임의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하수등이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수등의 수량 산정방법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

가) 업소별 부담액 산출

$$AS = M \times \frac{QI}{QT}$$

AS : 업소별 부담액

M : 월간 유지관리비

(aM : 기본요금 + bM : 처리요금)

처리장 운영을 위한 1개월간의 유지관리비를 산출하되 직접경비와 간접경비로 구분한다.

○ 직접경비 : 처리장 운영예산에서 집행된 월간 총비용

○ 간접경비 : 직접경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QT : 월간 처리용량 (1일 처리용량 * 해당월의 일수)

※ 1일 처리용량 - 도곡온천 6,000 M/T 화순온천 2,000 M/T

QI : 개별업소에 설치한 계량기의 사용량 (온천수 + 상수도)

나) 유지관리비 산출에 적용할 계수

구분	내용	산출근거
유지관리비	직접경비 (기본요금 + 처리요금)	
기본 요금	소계	
	○ 인건비 : 현장관리 및 시설 관리에 필요한 인원	화순군 정원규칙에 별도 규정 (기계1, 전기1, 환경1, 사무1)
	○ 복리후생비 ○ 사무관리비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준용 인건비의 5%
처리 요금	소계	
	○ 시험수수료 ○ 동력비 ○ 약품비 (재료비) ○ 오니처리비 ○ 시설유지비 (수선유지비)	월간 지출증빙서 해당 관서 및 업체 의 납부고지서 월간 지출증빙서 월간 지출증빙서 월간 지출증빙서

[별지 3호 서식]
고지번호

원인자부담금 납입통지서 (납입고지용)	
업소명	
성명	
산정기준	년 월분
하수량	톤/월(톤당 원)
총유지관리비용	원
납입통지금액	
합계	
납기내금액	
납기후가산금	
미수부담금	
위 하수종말처리장 이용자 분담금을부 년 월 일까지 농협화순군지부 도곡.북면농협, 우체국에 납부 (납입) 하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화 순 군 수	
문의처 : 화순군은천개발사업소 (0612) 72-5750, 73-9695	

고지번호

원인자부담금 수납서 (수납처 보관용)	
업소명	
성명	
산정기준	년 월분
하수량	톤/월(톤당 원)
총유지관리비용	원
납입통지금액	
합계	
납기내금액	
납기후가산금	
미수부담금	
위 금액을 하수종말처리장 이용자 분담금으로 정히 영수함. 19 년 월 일	
수납처: 화순농협, 도곡.북면농협, 우체국	
화 순 군 수 귀하	

고지번호

원인자부담금납입영수증 (납부자보관용)	
업소명	
성명	
산정기준	년 월분
하수량	톤/월(톤당 원)
총유지관리비용	원
납입통지금액	
합계	
납기내금액	
납기후가산금	
미수부담금	
위 금액을 하수종말처리장 이용자 분담금으로 정히 영수함. 19 년 월 일	
화 순 군 수	
귀하	

